



부 산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누2226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동원산업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5구합20191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0. 16.
판 결 선 고	2015. 10.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1,479,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61,749,990원'은 오키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고 한다)의 문언과 취지에 의하면 '외국향로에만 취향'하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실제 사용되는 선박에 대해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다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에서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여 선박의 실제 용도 외에 원양어업허가를 받을 것을 취득세 감경 요건으로 추가한 것은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포기이기도 하여 가급적 억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특히 정책목표달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면제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점(헌법재판소 1996. 6. 26. 선고 93바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는 해운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박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경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방세 감경은 공익성, 국가의 경제·사회 정책, 조세의 형평성,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감경 대상을 탄력적·유동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데,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서 위와 같은 사항을 열거하기는 부적절하므로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는 점, 취득세 감경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범주에 해당하므로 침익적 행정행위에 비하여 하위 법령에 폭넓은 재량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취득세 감경의 대상을 '외국향로에만 취향하기 위하여 취득하는'으로 구체적으로 한정된 뒤, 그 범위 내에서 개별적인 면제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 위임에 근거하여 취득세 감경 대상을 세부적으로 제한하여 정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법률 조항이 부여한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효관

판사 이봉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2-03

판사 이상완